

학교체육 육성지원비 지급규정

제정 2021.09.2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시·도대항으로 치러지는 전국종합체육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도내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 및 대학운동부 육성을 위한 지원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우리 도 관내 소재 초·중·고·대학교 운동부 및 지도자에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호 기준에 따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지원비를 지급한다.
2. 특수목적교인 경북체육중고등학교의 경기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경기력향상지원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3조(재원) 학교체육지원비 지원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1. 본회 세출 예산에 책정된 금액 범위 내
2. 도체육진흥기금, 국비 등 지원사업비

제4조(지급액 결정) 학교체육 육성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 한다.

1. 해당학교의 최근 전국종합체육대회 성적, 육성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, 지급범위, 지급금액 등은 별표 1에 의거하여 학교체육위원회 심의 의결로 지원 할 수 있다.
2. 기타 학교와 지급금액에 따른 상호협약서 체결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할 수는 없다.

제5조(지급시기 및 방법)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원금은 월 또는 반기별 지원하고,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시기를 정할 수 있다.
2. 개인 수령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학교 등 기관·단체가 될 경우에는 대표(공금)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 (2021.09.2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.

[별표 제1호]

(단위 : 원)

구 분	지급대상	지 급 액
경기력향상 지 원 비	·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지도자	500,000이하/월
학교운동부 육성지원비	· 학교운동부 지도자 (초·중·고·대학)	3,000,000이하/월
	· 학교운동부 (초·중·고·대학)	100,000,000이하/년